

- 목 차 -

| 1. | 일반행정분야 | • 1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|
| 2. | 산업 · 경제분야 | - 6 |
| 3. |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| - 7 |
| 4. | 농어업·축산·산림분야 | - 8 |
| 5. | 보건 · 복지 · 여성분야 | 17 |
| 6. | 환경분야 | 22 |
| 7. | 도시ㆍ교통ㆍ건설분야 | 24 |
| 8. | 재난안전분야 | 29 |

일반행정분야

| 제목 | 종 전 및 신 규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| - (중앙) 시도 200억원 이상, 시군 100억원 이상 - (도) 시도 40억~200억원, 시군 40~100억원 | ●정기 심사 연 3회 로 조정 - (접수) 1차 1월 31일, 2차 4월 30일, 3차 8월 31일까지 | 지방재정법 제37조,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3조 및 4조 ('18.1.1.) | 기획조정실 (예산담당관) |
| 행정심판 조정제도 도입 | 〈신 규〉 | ●행정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가능 - 성립한 조정에 관하여는 재결과 동일한 효력 인정 - 조정 절차 및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행령 개정 후 수립 예정 |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('18.5.1.) | 기획조정실 (행정심판 담당관) |

| 제 목 | 종 전 및 신 규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●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- 2,000cc 초과 비영업용승용 자동차 신규 등록 : 50%감면 | ●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연장(2018.01.01.~2018.12.31.) - (좌동) | | |
| 경기도지역개발 | - 감면대상 외 전액면제 (자동차 신규·이전등록, 그 밖의 허가 및 등록, 각종계약의 체결) | - (좌동) | 경기도지역개발기금 | 기획조정실 |
| 채권발행 | - 5,000만원 이상 비영업용승용 자동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매입기준에 따라 전액 부가 | | 설치조례 | (예산담당관) |
| | - <추가> | -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 60일까지는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 (추가) | | |
|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| 〈신 규〉 | ●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- 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 결정 -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및 지원 요건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행령 개정 후 수립 예정 |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('18.11.1.) | 기획조정실 (행정심판 담당관) |

| 제 목 | 종 전 및 신 규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| 〈신 규〉 | ● 시·도지사에게 5년마다 균형인사계획 수립 의무화 -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-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행안부 제출 의무화 |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('18. 1. 예정) | 자치행정국 (인사과) |
| 전보 필수보직기간 확대 | ● 전보 필수보직기간 : 1년 6월 ★ 사회복지, 감사, 법무 등 업무 : 2년 ● 실국내 전보시 필수보직기간 미적용 | |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('18. 1. 예정) | 자치행정국 (인사과) |
| 승진임용제한 가산 기간 확대 | • 금품·항응 수수 및 성관련 비위자 승진임용 제한가산(3개월) | 금품・항응 수수 및 성관련 비위자 승진임용 제한 가산 기간 확대(가산기간 : 3개월 → 6개월) * 견책(6월), 감봉(12월), 정직・강등(18월) |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 ('18. 1. 예정) | 자치행정국 (인사과) |
| 거주여권제도 폐지 | • 해외이주신고자,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,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거주여권 발급 | | 해외이주법 제4조 제3호 ('17.12.21.) | 자치행정국 (언제나 민원실) |
| 납세자 권리보호 | ● 납세자보호관제 - 조례로 정하여 임의 배치 - 고충민원처리, 세무상담 등 | ●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- 법령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의무 배치 - 현행업무 + 납세보호관련 업무* 추가(시행령 및 조례) * 기한연장·징수유예·체납처분유예 결정 등 |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('18.1.1.) | 자치행정국 (세정과) |

| 제 목 | 종 전 및 신 규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지방세특례 (지역아동센터) | 〈신 규〉 | ● '지역아동센터'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공부방 등)에 대해 감면 신설 - 취득세·재산세 100% 감면 - 일몰기한: '20.12.31.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('18.1.1.) | 자치행정국 (세정과) |
|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하향 | • 5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- 단,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 미확보 및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(5만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) | |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 제1항 ※ 2017. 12. 8. 국회 본회의 의결 (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) | 자치행정국 (세원관리과) |
| 체납자 압류물품 전문기관 매각 대행근거 마련 | < 신설 > | 예술적 · 역시적 압류재산의 경우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대행 현행법은 압류재산 매각 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 대행 가능 부동산이 아닌 예술적 ·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 등은 전문성 부족으로 매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¹⁾되고 있어 전문기관에 의한 매각을 통한 판매수입 증대 필요 국세징수법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 규정 존재 | 「지방세징수법」 제71조의2 ※ 2017. 12. 8. 국회 본회의 의결 (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) | 자치행정국 (세원관리과) |
|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 | • 세무조사 시작 전에 조사대상 세목, 조사기간, 조사사유 등을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함 | 그 에 무소자 시작 전에 소사내 첫 세폭 소사기가 소사사유 |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3조 제1항 ※ 2017. 12. 8. 국회 본회의 의결 (2018.1.1. 시행) | 자치행정국 (세원관리과) |

| 제 목 | 종 전 및 신 규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가족수당 지급기준 | ● 부양가족(직계비속 등) 연령기준 -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-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◆ 부양가족(직계비속 등) 연령 기준 조정 : 20세 → 19세 -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-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|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('18.1.1.) | 자치행정국 (회계과) |
| | ● 자금관리 주관: 세정과장 - 자금관리계획 및 자금지출 | ● 자금관리 주관 변경 : 세정과장 → 통합지출관(회계과장) < 자금관리 사무 > | | |
| 재정자금 통합관리 · 운용 | 종합계획 수립 - 유휴자금 운용 - 자금배정 - 세입(징수)종합계획 수립 - 금고 관리·감독 | ① 자금관리계획 및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 ② 유휴자금 운용(통합계정관리) ③ 자금배정* ④ 세입(징수)종합계획 수립 ⑤ 금고 관리·감독 세 정 과 세 정 과 | 지방회계법 제45조,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161조 ('18.1.1.) | 자치행정국 (회계과) |
| | | * <자금배정> 일 2회 → 지급결의 즉시 배정 | | |

2 산업ㆍ경제분야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자리안정자금 | 〈신 규〉 | ●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 지원 및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- 대상 :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 - 요건 :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자 - 지원 : 노동자 인건비 지원(1인당/월 13만원 지급) & 사회보험료 경감(1인당/월 △12만원) |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정부합동 ('18.1.02.) | 경제실 (일자리경제정 책과) |
|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| 〈신 규〉 | 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,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자산형성 및 복리후생 지원 * 선발인원는 2018년 1월 중 공고예정 - (일하는 청년 연금) ○ 지원대상: 도내 거주,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만18~ 34세 청년근로자(주36시간이상근로),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○ 지원금액: 10년간 매월 개인별 매칭 금액 지원 ※ 개인:도=1:1 매칭, 개인은 10만원, 20만원, 30만원 중 선택 - (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) ○ 지원대상: 도내 거주, 도내 중소제조기업 만18~34세 청년근로자(주36시간이상근로),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 - 지원금액: 2년간 매월 30만원 지원 - (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) ○ 지원대상: 도내 거주,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만18~ 34세 청년근로자(주36시간이상근로),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- 지원금액: 1년간 80만원~120만원 지원 ※ 동일사업장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|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('16.1.1.) 경기도 청년 일자리 | 경제실 (일자리경제 정책과) |

문화·체육·관광분야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수어통역 도우미 배치 | 〈신 규〉 | ● 도청 및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- '18년 2월부터,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 | 도 방침 (2018.2월) | 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 |
| 통합문화이용권 (문화누리카드) 확대 | | ● 지원금 인상: 1인당 연간 6만원 → 7만원 ● 사용처 확대: 기존 경기관람외 체육시설 이용도 포함 |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(2018.1월) | 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 |
| 경기도문화영향 평가 도입 | 〈신 규〉 | 주요 정책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진단・평가 제도 도입주요 정책 및 사업에 문화적 요소 증대 기대 | 경기도문화영향평가 조례 ('17.12. 20.) | 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 |
|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및 시행 | 〈신 규〉 | ● 도내 지역서점 대상 인증제 도입 및 시행 - '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' 심의를 통한 인증 1) 인증서 교부 및 경기도지사 인증 현판 부착 2) 31개 시·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인증 지역서점 우선 구매 3) 홍보, 경영 컨설팅, 교육, 시설개선 지원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|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'17.6.13 개정) | 문화체육관광국 (콘텐츠산업과) |

농어업·축산·산림분야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청탁금지법 관련 | ● 선물비 상한액 5만원 ●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 | ▶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선물비 가액기준 10만원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·재료의 50%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 원,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 |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('18. 2월 예정) | 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 |
|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| 〈신 규〉 | 지역이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 이동 과일간식 공급(道 사업) 사업 량: 38,000여명 사업기간: 2018. 3월~ 11월, 주 2회 지원단가: 1,600원 /150g (1인 1회 기준)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과일간식 공급(국비 지원) 사업기간: 2018. 5월~12월, 주 1회 지원단가: 2,000원/150g (1인 1회 기준) | 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3조 (2018. 3. 1.) | 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 |
| 육묘업 등록 | 〈신 규〉 | ●육묘업의 등록 등 -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 -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관련 교육(16시간)을 이수 |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('17.12.28.) | 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 |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논 타작물 재배지원 (쌀 생산조정제) | 〈신 규〉 | ● 논 타작물 재배전환 농업인에 ha당 평균 3,400천원 지원 - 사업량: 5,199ha - 사업비: 17,677백만원(국 14,141, 도 1,061, 시군 2,475) * 부담비율: 국비 80%, 도비 6%, 시군 14% |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시행지침 ('18.1월 예정) | 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 |
| 쌀소득보전고정 직불금 | ●지급시기 : 11월 | ● 지급시기 : 9월 | 쌀·밭·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 | 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 |
| 밭농업직불금 | ● 지급시기 : 11월 ● 지급단가 : 45만원/ha | ● 지급시기 : 9월 ● 지급단가 : 50만원/ha | 쌀·밭·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 | 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 |
|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| 지급시기: 11월 지급단가 - 농지 55만원/ha, 초지 30만원/ha 마을공동기금 마을공동기금 20%이상 의무적립 사용범위: 마을 활성화, 공익적 기능증진을 활동 등 | - 마을공동기금 자율적립 | 쌀·밭·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 | |
| 친환경농업 직불금 | ● 지급단가(천원/ha) - 논 : 유기 600, 무농약 400 - 밭: 유기 1,200, 무농약 1,000 - 유기지속 : 밭 600, 논 300 | ●지급단가(천원/ha) - 논 : 유기 700, 무농약 500 - 밭 : (과수) 유기 1,400, 무농약 1,200 | 2018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안 (2017.12.12.) | 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 |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사업지 확대 | ● 양식수산물재해보험(송어) 사업지역(8개 시·군) - 강원 영월·정선·춘천·평창 - 경북 구미·상주 - 충북 보은·충주 | ● 양식수산물재해보험(송어) 사업지역 확대(9개 시·군) - (좌동) - (추가) 경기 가평 |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개정 ('17. 9.11.) | 농정해양국 (수산과) |
| 양식어업 신규어장 개발제한 강화 | | ● 양식어업 신규어장 개발제한 강화 - 불법시설물(면허지 외 시설, 초과시설)이 있는 시·군·구 단위의 수면 | 어장이용개발계획 시행지침개정('18. 1. 1.) | 농정해양국 (수산과) |
|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제한 강화 | ● 연안통발 그물코는 22mm이상 사용이 가능 - 단, 낙지를 포획할 경우, 통발 그물 입구 깔대기의 둘레 140mm이하 사용시 그물코 18mm이상 사용기능 | |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4 ('17.12. 3.) | 농정해양국 (수산과) |
|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 기간 확대 | 시 최대 1년간 재허가 제한 - 1년 제한 :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, 허가외 어업, 타인 | - 10월~1년 제한 : 조업자제선 위반, 신고없이 1년이상 휴업, 제한조건 위반 등 | 신고 등에 관한 | 농정해양국 (수산과) |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신청 시 교육이수 의무화 | 〈신 규〉 | ●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신설 -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실시 하는 수산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수강 |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('17.12.3) | 농정해양국 (수산과) |
| 김 양식어장 활성 처리제 성분 허용 기준 조정 | ● 활성처리제 성분 허용 함유량 4.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 가. 소금 : 16% 이상 나. 염소이온 : 16% 이상 다. 나트륨 : 5% 이상 | 가. 소금 : 10%~13% 나. 염소이온 : 15%~17% | 김 양식어장 활성 처리제 사용기준 제4조('17. 9.22.) | 농정해양국 (수산과) |
| 어선안전 관련 기준 및 처벌 강화 | ● 어선안전관리 기준 위반 과태료 -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자 : 과태료 100만원 | ● 어선 안전관리 기준 위반 과태료 상향 및 신설 - 상향)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자 <u>과태료 300만원</u> - 신설) 무선설비 미작동자,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, 신고 후 재설치 등 조치하지 않은 자 : 과태료 300만원 - 신설) 어선만재홀수선 표시에 따른 과적·과승 항행행위 금지 위반: 과태료 300만원 | 어선법 일부개정 ('17.10.31.) | 농정해양국 (수산과) |
| 어선중개업 제도 신규 도입 | 〈신 규〉 | ● 어선중개업 제도 신설 - 시행령)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및 과징금 부과기준·절차, 등 - 시행규칙) 어선거래시스템의 정보이용,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, 어선중개업 등록신청·교육·지도감독 등 | | 농정해양국 (수산과) |

| 제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지원 확대 | ● 대상지역: 8km이상 떨어진 연육교가 없는 도서 - 도내(4개소): 안산(풍도, 육도), 화성(국화도, 입파도) ● 지급액: 어가당 55만원 | ● 대상지역: 전(全) 도서 - 도내(5개소): 안산(풍도, 육도), 화성(국화도, 입파도, 제부도) ● 지급액: 어가당 60만원 | '18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지침 ('18. 1. 1.) | 농정해양국 (수산과) |
| 처방대상 수산용 의약품 확대 | ● 수의사 처방대상 수산용의약품 성분: 7종 - 마취제: Isoeugenol, Tricaines - 호르몬제: Gonadotrophin - 항생제: 독사이클립 에라스코이신, 옥시테트라사이클립, 스피라마이신 | - 항생제 : 독씨이라, 에스코이신 옥세르라이클린 스피라이신 |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, 제3조('18. 5. 1.) | 농정해양국 (수산과) |
|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| - 보조10%, 융자70%, 자담20% | ●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 축종 제한(가금류만 보조) - 보조 30%, 융자 50%, 자담 20% ※ 가금류도 2018년까지 보조 지원 | 농식품부 행정예고 <축산경영과-3969(2017.6.30.)> ('18.1.1.) | 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 |
|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| <신 규〉 | 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(농식품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) - 축사 내·외부 환경기준(악취, 축분처리, 정리정돈 등) 평가후 지정(농식품부) ※ 미지정자 2020년 이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보조사업 참여 제한 | 2018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('18.1.1.) | 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 |

| 제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보급 | <신 규〉 | ●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'18년부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 | 2018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('18.1.1.) | 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 |
| 액비살포비 지원액 변경 | ● 액비살포비 차등지원액 - A등급: 25만원/ha - B등급: 20만원/ha - C등급: 15만원/ha ※ 액비유통센터 평가(농식품부) | 액비살포비 차등지원액 변경 A등급: 30만원/ha(증액 5만원) B등급: 20만원/ha C등급: 10만원/ha(감액 △5만원) ※ 액비유통센터 평가(농식품부) | 2018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('18.1.1.) | 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 |
| 식용란에 대한 규정 신설 | 〈신 규〉 | 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하여야 함 |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 ('18.4.25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| | 〈신 규〉 | ● 「축산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 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|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('18.4.25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| | ●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영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. | ●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, 시 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|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('18.4.25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| | 〈신 규〉 | ●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·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|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 ('18.4.25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
| 제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 허용 | 〈신 규〉 | ●시・도지사가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차량을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도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,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차량의 기준 등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 - 허가 가축 : 소, 돼지 제외 - 시설기준 조정・일부시설 설치 생략 가능 : 말·당나귀·사슴은 10마리 이상, 양은 50마리 이상, 토끼는 100마리 이상, 닭·오리·칠면조·거위·메추리·꿩은 500마리 이상을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시설기준 - 차량은 길이 7.3미터, 폭 2.3미터 이상, 높이는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 |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에 라목 ('17.11.17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| 달걀의 세척 및 보존·유통기준 신설 | 〈신 규〉 | 달걀의 세척 및 보관방법 신설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30℃ 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℃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냉장 보존·유통 |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('17.11.2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| | ● 달걀의 포장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함 | ●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을 산란일자 로 개정 |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('17.11.2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| | 〈신 규〉 | ● 알가공품 제조 가공을 위해 할란후 미살균상태의 알 내용물은 5℃이하 에서 72시간 이내 사용 신설 |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('17.11.2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| 신고포상금제도 지급기준, 방법, 절차 구체화 | 〈신 규〉 | ● 신고포상금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며,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한정 |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2 ('18.3.22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
| 제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| | , , , = , , , , , |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('18.3.22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|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시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변경 | ● 죽이는 행위 ● 상해를 입히는 행위 ● 화학적 방법의 상해 | ● 죽음에 이르는 신체적고통과 상해 ● 혹한 등 환경(신설) ● 강제급여나 상해 |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('18.3.22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|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대여 금지행위 예외 조항 신설 | 〈신 규〉 | ● 장애인보조견 대여 ● 체험.교육.촬영 대여(인력과 관리가 있을 경우) |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('18.3.22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|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변경 및 신설 |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 | ● 동물생산업 세부범위를 소규모생산(소형견20마리/중형견 10마리/대형견5마리)과 일반생산으로 구분 ● 동물전시업・동물위탁관리업・동물미용업・동물운송업 |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('18.3.22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| ● 동물생산업 신고 | ● 동물생산업 허가 |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, 제41조 ('18.3.22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|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| 〈신 규〉 | ● 장묘업제외 ● 당해년 1회3시간 |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('18.3.22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|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및 신설 | ● 영업자 - 동물장묘업자, 동물판매업자, 동물수입업자, 동물생산업자 | ● 영업자와 그 종사자 - 동물장묘업자, 동물판매업자, 동물수입업자, 동물생산업자 - 동물전시업, 동물위탁관리업, 동물미용업, 동물운송업 |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('18.3,22.) | 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 |
| 입목벌채 등 수반 산림사업의 첨부서류 | | ● 벌채와 굴취·채취 시 첨부서류 구분 - 벌채 시 첨부서류 : 벌채예정수량조사서 - 임산물 굴취·채취 시 첨부서류 : 굴취·채취예정수량조사서 |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('17.12.11.) | 축산산림국 (산림과) |
| 입목벌채·굴취 신고 시 신고필증 발급 | 〈신 규〉 | ● 목재 수출 시 합법성 인증을 위해 입목벌채 등에 대한 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신고필증(신고수리증) 발급 |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('17.12.11.) | 축산산림국 (산림과) |
|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변경 | 〈신 규〉 | 회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하여 운영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업체와 계약 후 위탁 운영(시설당 3명 배치) | 산림복지법 제20조 | 축산산림국 (산림과) |

보건・복지・여성분야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|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긴급복지지원법 | < 항목 일부 변경·추가 > |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단전 시 1개월 경과규정 삭제 부소득자의 휴·폐업 및 실직까지 확대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 추가 | 긴급복지지원범 제2조제7호 ('17.11.3.) | 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 |
| | • '17년 대비 약 1.16% 증액, (생계·주거·시설이용·교육지원, 연료비) | 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- 생계지원금액: 1인기준 월 432,900원 - 주거지원한도액: 1~2인 중소도시 월 253,800원 -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한도액 1인 월 535,900 - 교육지원금액: 초등학생 분기 221,600원 - 그 밖의 지원(연료비): 월 96,000원 | 긴급복지지원범 제9조제13조, 동법 시행령 제7조 ('18.1.1.) | 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 |
| 맞춤형급여 | • 기준 중위소득 (1인가구1,652,931원,4인가구4,467,380원) | ● 기준 중위소득 (1인가구 1,672,105원, 4인가구 4,519,202원) |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-139호 ('18.1.1.) | 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 |
| | 〈 신 규 〉 | ● 교육급여 수급자(기준 중위소득 50% 이내) 초등학생 학용품비 50,000원 | 교육부고시 제2017-216호 ('18.1.1.) | 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 |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청년희망키움 통장 도입 | < 신 규 > | ● 기준중위소득 20%이상 생계급여수급 청년(만15세~만34세)의 자산형성지원(36개월) - 근로소득공제 저축(1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(월평균 30만원) - 평균 1,500만원 지원(3년 이내 탈수급시) |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-6227(2017.9.22)호 | 보건복지국 (사회적 일자리과) |
| 자활사업 | ● 자활참여자 급여 - 근로유지형 : 26,320원/일 - 사회서비스형 : 35,300원/일 - 시장진입형 : 39,010원/일 | ● 자활참여자 급여 인상 - 근로유지형 : 26,320원/일 ☞ 27,110원/일 - 사회서비스형 : 35,300원/일 ☞ 38,190원/일 - 시장진입형 : 39,010원/일 ☞ 42,210원/일 |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-8026(2017.12.12.) | 보건복지국 (사회적 일자리과) |
| 장애인 일자리 사업 | ● 장애인일자리 사업 급여 - 복지일자리 : 363천원/월 - 일반형일자리 : 1,353천원/월 - 시간제일자리 : 676천원/월 | ●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급여 인상 - 복지일자리 : 363천원/월 ☞ 422천원/월 - 일반형일자리 : 1,353천원/월 ☞ 1,574천원/월 - 시간제일자리 : 676천원/월 ☞ 787천원/월 |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-8831(2017.11.24.) | 보건복지국 (사회적 일자리과) |
|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| ●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- 고용노동부 지정 34개 직종 ※ 정규직종(20개), 시범직종(12개), 레저 및 생활기술 직종(2개) | ●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道 자체종목 신설 - 고용노동부 지정 34개 직종 - (신설) 道 자체종목(2개) ※ 기능장애인 욕구조사 및 취업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|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 ('18. 3월 예정) | 보건복지국 (사회적 일자리과) |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 |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- 건강보험료 금액의 6.55% | ●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- 건강보험료 금액의 7.38%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('18.01.01.) | 보건복지국 (노인복지과) |
| 장애인연금 | 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- 206,050원 지급 | 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- 250,000원 지급 | 장애인연금법 제6조 ('18.9.1.) | 보건복지국 (장애인 복지과) |
|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 | 〈신 규〉 | ●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거래 대금 지급 *6개월 경과 후에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 지급 | 약사법 제47조 (2017. 12. 23.) | 보건복지국 (보건정책과) |
|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| •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- 6개월~59개월 미만 영유아 | ●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확대 - (종전 연령 포함)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(초등학생) 보건소 및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|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-4031('17.9.14) ('18.10월) | 보건복지국 (감염병 관리과) |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위생용품 관리 | 〈 신 규 〉 | ●위생용품 관리주체를 식약처로 일원화하여 전문성 확보 ●개인 위생용품까지 관리 범위 확대 - 종이행주·타월, 면봉, 화장지, 1회용 기저귀 등 추가 ●위생용품 수입업 신설로 수입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●세척제·헹굼보조제의 품목제조보고 의무화 | 위생용품 관리법 ('18.4.19.) | 보건복지국 (식품안전과) |
| 품목제조번호 표시 | • '17.1.1. 이전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번호 표시 유예 ('17.12.31.) | ● 품목제조보고 번호 표시 - 2017.01.01. 이전에 보고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에 품목제조보고 번호 표시 ※ 신규 품목제조보고의 경우 2017.01.01. 시행 | 식품위생법 제10조 ('18.01.01.) | 보건복지국 (식품안전과) |
| 식품과 축산물 기준·규격 통합 | ● 축산물 가공품을 "식품의 기준 및 규격"으로 이관 | ● 축산물가공품을 일반 가공품과 동일하게 관리 -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서 "가공"에 관한 사항 삭제 - '축산물가공품'의 기준·규격을「식품위생법」으로 이관 ※ 고시가 통합되어도 '축산물가공품'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의 관리를 받음(법 개정 전까지) | 식품위생법 제7조 ('18.01.01.) | 보건복지국 (식품안전과) |
| 식품첨가물 품목명 개선 | • 식품첨가물 품목명(39개) (소르빈산, L-글루타민산 등) | ● 식품첨가물 품목명(39개)에 대한 외래어 표기 표준화 -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목명이 표기된 기존 제조·가공· 소분·수입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 가능 예) 소르빈산→소브산, L-글루타민산→L-글루탐산 등 | 식품첨가물 공전 ('18.01.01.) | 보건복지국 (식품안전과) |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아동수당 지원 | 〈신 규〉 | ● 아동수당 지원 | 아동수당법 | 여성가족국 |
| | | - 지원대상 : 소득하위 90%이하 만6세 미만 아동 | 제정(예정) | (아동청소년과) |
| | | - 지 원 액 : 1인당 월 10만원 | (소관위원회 심사중) | |
| | | - 지급시기 : 2018. 9월부터 | | |
| 여성청소년 | ●(주관부서) 보건복지부 | ● 주관부서 : 여성가족부 |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| 여성가족국 |
| 건강지원사업 | ●(신청기관) 시·군 보건소 | ● 신청기관 : 읍·면·동 주민센터 | ('18년 하반기 예정) | (아동청소년과) |
| (위생용품지급) | ● (지급대상) 기준중위소득40%이하, | ●지급대상 : 중위소득 50%이하,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 | | |
| | 의료급여・생계급여 수급・이동복지 | 상 만11세~18세 여성청소년 | | |
| | 시설 이용 만 11세 18세 여성청소년 | ● 지급방식 : '국민행복카드'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지급 | | |
| | ●(지급방식) 현물지급 | ● 지원내용 : 위생용품 구매비용 월 10,300원 (286원×6일×6개) | | |
| | ●(지원내용) 6개월분 1개세트, | | | |
| | 총 216개(6개월×6일×6개)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6 환경분야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| 〈신 규〉 | 모든 시(市) 이상 지자체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. 인구 30만 이상의 市('19.12.31.), 그 밖의 市('21.12.31.) 작성일 기준 5년마다 재작성 |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('18.5.29.) | 환경국 (환경정책과) |
|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대상 확대 | ●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대상 - 국방목적의 사업 | ●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대상 확대 - 국방목적의 사업 -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·지원받아 시행하는 자연 환경보전사업(추가) |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('18.5.29.) | 환경국 (환경정책과) |
|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| ●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실시 | 경기도내 17개 市지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: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(2.5톤 이상)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차량 벌칙: 200만원이하 과태료 |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('18.1.1) | 환경국 (기후대기과) |
| 도 유료도로 전기차 통행료 감면 | ●일반차로를 통한 육안 확인 통행료 감면 | ●전기차 통행료 감면 방식 변경 - 일반 차로를 통한 통행료 감면 종료 - 하이패스 차로를 통한 전기차 통행료 감면 시행 |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항('08.3.28.) | 환경국 (기후대기과) |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폐기물처분 부담금제 시행 | 〈신 규〉 | 부과시점: 2018년 이후('18년 자료를 근거로 '19년 부과) 부과대상: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 부과대상자: 시장·군수·구청장,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부과권자: 생활폐기물⇒시·도 사업장폐기물⇒한국환경공단 부과회수: 년 1회 부과기준 -(산정기준) 매립·소각시설 반입량 기준, 중량단위(무게) -(요 율) 생활폐기물, 사업장폐기물(가연성/불연성), 건설 폐기물 등 차등세율 -(산정지수) 최초년도를 1로 하고,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하여 고시 |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('16.5.29.) | 환경국 (자원순환과) |
| 먼지총량제 시행 | 〈신 규〉 | ●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'18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- 대기 1~3종 중 먼지배출량 0.2톤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- 대상업종 : 발전시설, 일반보일러, 소각시설, 고형연료 - 업소별 연간 먼지배출허용총량 준수 |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('18.1.1.) | 환경 국 (환경안전관리과) |
| 사고대비물질 확대 | ● 사고대비물질 69종 | ● 사고대비물질 97종으로 확대 ※ 사고대비물질 :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(急性毒性)·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화학물질 |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('18.1.1.) | 환경국 (환경안전관리과) |

7 도시・교통・건설분야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 | 〈신 규〉 | ● 개발제한구역내 법령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폐지 -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 |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('18.1.1.) | 도시주택실 (지역정책과) |
|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| ● 층수가 2층 이상,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| ●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-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을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- [별표1]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 |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('1712.01.) | 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 |
| 건축물의 분양광고 방법 개선 | ●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함 | | 건축불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('18.01.25.) | 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 |
|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시 공동 심의 | ●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침 |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변경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함 |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('18.2.10.) | 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 |

| 제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 | 〈신 규〉 | ● 아파트 층간흡연 분쟁개입 법적근거와 절차 마련 -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주체(관리사무소)에 층간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가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확인과 금연조치 등 권고 가능 |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, 제20조의2 ('18.2.10.) | 도시주택실 (공동주택과) |
| 입주자등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가능 | 〈신 규〉 | ●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 |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('18.2.10.) | 도시주택실 (공동주택과) |
| 회계감사의 감사인 회계감사결과 제출근거 마련 | 〈신 규〉 | ●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|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('18.11.1) | 도시주택실 (공동주택과) |
|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| | ● 도비 지원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(도비 100억원) - 시·군 사업공모 또는 수요조사 후 평가 절차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·지원 | 주차장법 제21조 ('17.6.3.) | 교통국 (교통정책과) |
|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 운영 | <신 규〉 | ●시내버스 서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 운영 - 경기도민 257명 구성(장애인 등 교통약자 포함) - 도민의 시내버스 서비스 직접 평가 및 개선제안 |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('17.1.5.) | 교통국 (버스정책과) |

| 제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| ● 근거조례 :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● 지원내용 : 대형1종 면허취득 (최대 48만원, 운전적성정밀검사, 버스운전자격증취득 포함) | 지원대상: 만35세이상 만60세미만 <2018.1.1. 기준> 상반기 500명, 하반기 500명 예정 ●근거조례: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※ 조례 개정추진 중 ●지원내용 ① 대형1종 면허취득비용 80% (최대 48만원, 운전적성 정밀검사, 버스운전 자격증취득 포함) ②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(100%) ③ 버스업체 연수비용(60%) |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('18년 상반기) | 교통국 (버스정책과) |
| 2층버스 확대 운행 | ● 12개 市 운행 중 - 수원, 성남, 고양, 용인, 안산, 남양주, 화성, 시흥, 파주, 김포, 광주, 하남 | 그 그런 성감 보상 용인 원산 감상도 와성 사용 파도 그 |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('18년 중) | 교통국 (굿모닝버스 추진단) |
|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|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 12개 시・군 20개노선 (파주, 김포, 포천, 시흥, 가평, 오산, 연천, 수원, 군포, 화성, 광명, 고양 운행 중) | ●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- 6~8개노선 추가계획(수요조사 및 노선 공모 통해 선정) |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1호 ('18년 3월 예정) | 교통국 (굿모닝버스 추진단) |
|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| 〈신 규〉 | ●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(용인, 남양주 등 14개 시·군) - 광역버스 운행 노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 |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('18년 상반기) | 교통국 (굿모닝버스 추진단) |

| 제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공형 택시 도입 | 〈신 규〉 | 28개 市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 도입 추진사업공모를 통한 사업대상 市 선정지원형태 : 국비 50%, 시군비 50%지원금액 : 국비 50백만원 |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바목 ('18년 중) | 교 통 국 (택시정책과) |
| 지하안전 영향평가 실시 | 〈신 규〉 | ●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- 대상사업: 법령에 따라 20M 이상을 굴착하는 사업 |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('18.1.1.) | 건설국 (건설정책과) |
|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실시 | 〈신 규〉 | 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- 대상사업: 법령에 따라 10M~20M를 굴착하는 사업 - 제외대상: 긴급복구공사 |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('18.1.1.) | 건설국 (건설정책과) |
|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실시 | 〈신 규〉 | ●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|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('18.1.1.) | 건설국 (건설정책과) |
| 지하굴착 사전컨설팅 실시 | 〈신 규〉 | ● 10M 미만의 지하굴착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지하안전 전문가의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- 지원대상 : 경기도민으로써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사람 | 경기도 시책사업 ('18.1.1) | 건설국 (건설정책과) |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| 〈신 규〉 | ● 道 발주사업에 대하여 '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' 사용 - 수급자 및 하수급자가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 제한 - 대금의 적기지급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|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('18년 3월 예정) | 건설국 (건설정책과) |
|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 폐지 | ●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와 실태조사 제도가 병존 | ●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,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|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('18. 2. 4.) | 건설국 (건설정책과) |

8 재난안전분야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| ●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 | ● 층수가 6층 이상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 |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[별표 5] ('18.1.29.) ※ '17.1.26. 공포 | 재난안전본부 (재난예방과) |
|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| 〈신 규〉 | ●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및 내용연수 연한 규정 - 분말형태의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규정 ※ 내용연수 경과 분말소화기를 보유한 관계인은 시행일 ('18.1.29.) 이전까지 소화기 교체 또는 성능 확인 □ 한국소방산업기술원, 3년 1회 연장 가능 |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('18.1.29.) ※ '17.1.26. 공포 | 재난안전본부 (재난예방과) |
| 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| 〈신 규〉 | ● 연립·다세대주택 등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- 50세대이상 연립·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규정 |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[별표 5] ('18.1.29.) ※ '17.1.26. 공포 | 재난안전본부 (재난예방과) |
|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| 〈신 규〉 | ● 대규모 재난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업무중단 대비, 기관의 핵심기능을 사전에 파악하고, 이를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- 기관 핵심기능 분석, 업무승계 / 권한위임 -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시설/통신수단 등 대체시설 확보 - 재난시 인력운영 계획 수립 |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신설 ('18.1.18.) | 안전관리실 (안전기획과) |

| 제 목 | 신 규 및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근 거 (시행일) | 해당실국 (부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| ●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 유예 | ●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- 재난취약시설(음식점 등 19종)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 도입 - '18.1.1부터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 ※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|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2조 ('18.1.1.) | 재난안전본부 (사회재난과) |
|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| ●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-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추진 - 시·군의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인서를 경기도에서 발급 - 경기도 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인서를 행정안전부에서 발급 | - 멉 시행(18.10.25.) 이선 말급된 확인서는 인성 - 법 시행 이후 지정 기과 외 발급한 확인서나 유사한 형태의 | 제16조의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| 재난안전본부 (자연재난과) |
|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| | 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성 확인서 발급 |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 ('18.10.25.) | 재난안전본부 (자연재난과) |